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37
----------	------

제출년월일 : 2008년 5월13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채용 가능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공무원법 개정('08.12)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 불임(지방공무원법)

- 첨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표준조례안 1부
4. 관련법령 1부
5.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 ·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 ·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u></p> <p><u>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u></p> <p><u>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u></p>	<p><u>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p><u>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u></p>	<p><u>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u></p> <p><u>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u></p> <p><u>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생략)</p> <p>② <u>제11조제1호</u>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u>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u> 본다.</p>	<p>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1조</u>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③ _____</p> <p>_____ <u>당연히 복직된다.</u></p>
<p>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p> <p>① 별정직공무원이 <u>제11조제1호</u>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정원은 휴직자가 복진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p>

제천시 공고 제 2009 - 535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14.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별정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2008. 12. 31)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신설 (안 제4조의2)
-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 신설 (안 제12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4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 인사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641 - 5801, FAX 641 - 5469 담당자 : 엄세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증사도 소보, 폐복은 도인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64(2009.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치용법위 확대 및 육아휴직 시 면밀보충 등을 위한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 드오니, 도 및 시 군 인사부서에서는 등 개정내용이 조례에 반영(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계획(요지) 1부.
2.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1부. 끝.

충청북도자치행정국



수신자 도 및 시로 인사부서

지방법정직공무원 주사보 오세화 지방법정직공무원 이지영 지방법정직공무원 박승기

참조자

시일 2009.03.01~1421 (2009.03.03.) 접수 2009.03.01~0940 (2009.03.03.)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정 1985. 2.16 지기 180 ~ 2031호
개정 1985.10.18 지기 01100 ~ 12494호
1998. 9.17 운영 12100 ~ 451호
1999.11.16 운영 12100 ~ 124호
2009. 2.24 지방공무원과 - 51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11.16>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16>

제4조 (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

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1999.11.16>

제8조 (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6>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및 ④ 삭제 <1998.10.10>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역시(특별시·도·시·군·자치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삭제 <2009. 2. 24>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가) 따로 정한다.

부 칙 <1985.2.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조 개정 85.10.18>

부 칙 <198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 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아 재직 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 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9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외국인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3조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생사) 또는 소재(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④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6月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27>

② 공무원이 第30條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자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了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③ 공무원에게 行한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決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者의 직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4.20>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定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이후 당해 職級에 最初로 缺員이 발생한 때에 각각 消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4.20, 2007.4.27>

1. 휴직자의 부직
2. 파견된 者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자의 복귀 (전문개정 1978.12.6]

★지방행정주사	인사팀장	자치행정과장			

결과보고서

제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안외 3건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 및 규칙안

연번	공고번호	조례·규칙명	입법예고기간	의견조회(건)	의견제시
소계		조례2, 규칙2			
1	2009-53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안	'09. 4.14 ~ '09. 5. 4 (20일간)	127	없음
2	2009-534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전부개정안	'09. 4.14 ~ '09. 5. 4 (20일간)	217	"
3	2009-535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09. 4.14 ~ '09. 5. 4 (20일간)	115	"
4	2009-536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09. 4.14 ~ '09. 5. 4 (20일간)	233	"

2.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별도붙임

4. 제시의견 : 없음

붙임 : 조례규칙 개정 공고안 각1부.(별지) 끝.